

의안번호	제 300 호
의 결 연 월 일	2012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김양희 의원외 8명
발의연월일	2012년 3월 19일

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

(김양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0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2년 3월 19일

발 의 자 : 김양희, 최병윤, 김영주
유완백, 박문희, 김재중
김도경, 정 현, 김동환

제정이유
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도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주요내용

- 가.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도내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충청북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함(안 제5조).
- 나.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안 제6조).
- 다.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“충청북도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”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음(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).

라.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(안 제11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관련부서 협의 : 여성정책관과 협의함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

(1)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충청북도내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“한부모가족”이란 모자가족, 부자가족, 청소년 한부모가족, 조손가족을 말한다.
- 2.“모자가족” 또는 “부자가족”이란 모 또는 부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(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인 가족을 말한다.
- 3.“청소년 한부모”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.
- 4.“조손가족”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주(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인 가족을 말한다.
- 5.“아동”이란 18세 미만(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)의 사람을 말한다.
- 6.“한부모가족복지시설”이란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7.“한부모가족복지단체”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, 재산 등을 고려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정한다.

제4조(도지사의 책무)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생활실태 및 욕구조사)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도내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·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·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는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
2. 가족관계와 그 부양에 관한 사항
3. 취업, 소득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
4. 주거상태, 여가활용, 정보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
5.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 만족도 및 수요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도지사가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대학, 연구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(이하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
2.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장, 군수, 한부모가족복지단체

등에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원사업 등)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
2.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사업
3. 주거 환경개선, 생활자립 지원 사업
4.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육성 사업
5.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·자립 지원사업
6. 그 밖에 한부모가족의 의료·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·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

제8조(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“충청북도한부모가족 정책위원회”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에 관한 사항
2.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한부모가족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한부모가족 권익증진을 위한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1. 당연직위원
 - 가. 행정부지사, 한부모가족지원 담당 부서의 장
 - 나.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

다.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개발을 추진하는 도 산하 기관 장
라. 교육기관(교육청) 관련 부서의 장

2. 위촉직 위원

가.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계자

나.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관계자

다. 가족지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라. 그 밖의 관련 전문가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)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」에 따라 센터를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위탁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한부모가족지원법

제2조(국가 등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모" 또는 "부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.

가.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(遺棄)된 자나.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

다. 교정시설·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

라. 미혼자{ 사실혼(事實婚)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}

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

1의2. "청소년 한부모"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.

2. "한부모가족"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.

3. "모자가족"이란 모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(世代員)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인 가족을 말한다.

4. "부자가족"이란 부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인 가족을 말한다.

5. "아동"이란 18세 미만(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)의

자를 말한다.

6. "보호기관"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
7. "한부모가족복지단체"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.

제5조(보호대상자의 범위) ①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·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대상자로 한다.

제6조(실태조사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·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·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(고용의 촉진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

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4조의2(고용지원 연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「직업안정법」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7조(가족지원서비스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
2. 장애인, 노인,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
3. 취사, 청소, 세탁 등 가사 서비스
4. 교육·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
5.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,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

제17조의2(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
2.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

4. 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-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.

제25조(비용의 보조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